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 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2005. 8

통일정세분석 2005-14

---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2005. 8

---

황병덕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국제법상의 주권국가의 승인 .....	4
1. 국제법상의 주권 개념 .....	4
2. 주권국가 승인의 개념과 요건 .....	5
3. 국가승인의 방법 및 효과 .....	7
4. 국가승인의 제한 .....	8
III. 분단국 주권국가 승인에 관한 논쟁 사례: 동·서독 .....	9
1. 주권회복을 위한 기본법 조항과 서독의 주권 제약에 관한 국제법 .....	9
2. 동·서독 관계: 잠정적 특수관계 .....	12
3. 주권회복 과정으로서의 통일외교 정책 : 2 + 4 + 35 회담 .....	15
IV.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18
1.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과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 .....	18
2. 남북한 특수관계의 국제법적 문제점 .....	20
V.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통일정책적 과제 .....	22

## I. 문제제기

- 과거 우리 사회내부에는 북한의 주권 인정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표출되었음.
  -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 국제법적 차원에서 그 주권성을 인정하되, 다만 민족 내부관계 성격 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실체만을 인정, 국제법적 주권국가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입장과 더불어,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입각, 북한의 주권성이나 정치적 실체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을 불법점거집단으로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며 무력타도의 대상이라는 보수적 입장으로 대별되어 왔음.
  
-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남북 화해무드 조성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도록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 R&R 여론조사(2005.7.16)에 따르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사상 처음으로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개정의 필

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9%로 40.3%의 ‘개정할 필요가 없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최근 6자회담 관련, 북한은 “미국에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북한이 주권국가(sovvereign nation)로 인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북한을 유엔현장상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북한 주권성 인정문제는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 주장은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을 통하여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미국에 의한 국가승인을 통하여 체제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 미국이 북한을 유엔현장상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은 아직도 국제법 학계에서 논쟁 중인 유엔회원간의 간접적인 국가승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국가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 미국의 북한의 주권국가 승인은 6자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사적 언사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북한 사태 발전 여하에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리 주권문제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동북공정,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우리의 주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 통일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를 동·서독

분단국 사례와 비교·검토하여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과 향후 통일 정책의 과제를 고찰하고자 함.

- 우선 주권국가 승인을 국제법적으로 규명하고,
- 분단국 주권국가 논쟁사례로서 동·서독 경우를 검토하며,
- 남북한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국제 법적 성격과 한반도 통일과의 연관성을 집중 분석하면서,
- 남북한 특수관계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 향후 한반도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국제법적으로 바람직한 남북한 관계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 이를 위한 통일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II. 국제법상의 주권국가의 승인

### 1. 국제법상의 주권 개념

- 유럽에서는 30년 종교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최초의 국제조약인 베스트팔렌조약(1648)이 체결됨으로써 근대적 성격을 지닌 주권국가가 탄생되었음.
  - 신성로마제국이 몰락하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근대적 주권국가가 수립되었음.
  
- 주권국가의 국가주권은 국제법상의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대내적으로 그 국민과 영토에 대해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나 기타 어떠한 국제적인 권력에 대해서도 독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국민과 영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주권은 국내법상의 주권 개념에 기초를 두고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할 수 있는 권리(對人主權)와 영역을 영유·지배·처분할 권리(領土主權)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제법상의 국가주권은 특정국가가 독립국가로서 국내에서의 대인주권 및 영토주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국가가 이러한 주장을 승인·존중해 줄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
  
- 대내외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주권도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음.
  - 국제기구, 국제협정 등에 의해 주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및 WTO, NPT 등 다양한 국제협약에

- 의해서도 국가주권 제한이 이루어지며,
- 승전국과 패권국의 조약으로 국제법상 주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 주권국가 간의 분쟁,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법상 주권은 극히 제한 받거나 소멸될 가능성도 있음.

## 2. 주권국가 승인의 개념과 요건

-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주권국가는 영토와 인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주권이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받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고,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됨.<sup>1)</sup>
  - 근대국가가 물리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공적 성격을 지닌 반면,
  -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물리력을 독점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주권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분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나, 상호 국가승인을 한 경우에도 국가간 분쟁이 전쟁 등을 통하여 해결되는 등 주권국가의 (상호) 승인만으로 국가주권 확보·유지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1) 국가 승인의 경우 특정 국가가 영토, 국민, 통치조직 등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권리·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제법적 학설이 창설적 효과설(創設的 效果說)이다. 반면, 국가가 사실상 성립하면 국제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 승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선언적 효과설(宣言的 效果說)이 있다. 선언적 효과설은 다분히 자연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창설적 효과설은 실정법적 견지에 입각한 이론이며, 국제관행에도 합치된다.

- 국제법상 국가로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역, 국민, 자주적 정치조직을 구비하여야 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다른 국가들은 신생국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국제법의 준수 의사는 국제법에 대한 태도, 다른 국가와의 협조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의사가 항상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라도 무방함.
  - 국가로서의 승인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침략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성립되었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사례로는 미국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국가승인은 국가승인의 요건 구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유권적 조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승인하는 국가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승인 여부가 달려 있으며, 각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승인 시기에 시간적 지속(遲速)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음.
  - 승인 여건이 구비되기 전에 국가승인이 되는 경우를 시기상조 승인(時期尙早 承認)이라고 부르며,
  - 시기상조 승인의 실례로서 1778년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 본국인 영국과의 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프랑스가 미국을 승인한 경우 등이 있음.

### 3. 국가승인의 방법 및 효과

- 국가승인의 방식으로는 승인을 하는 국가가 선언, 통고, 조약상 명문규정 등 승인 의사를 직접 명시하는 명시적 승인과 정식 외교사절의 교환, 정식조약의 체결, 영사에 대한 인가장 교부 등의 승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묵시적 승인 방식이 있음.
  - 임시사절 파견 및 접수, 통상대표부의 설치허용, 국제회의의 참가 등의 행위는 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승인 의사를 명백히 보류하면 묵시적 승인은 성립하지 않음.
  - 유엔 가입으로 인하여 국가승인이 되는 경우는 논쟁의 여부가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국가승인의 국제법적 효력은 각 국가의 개별적 승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국가가 승인을 받게 되면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인격자로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被承認國) 간에 발생하며, 승인하지 않는 국가와는 사실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고, 법률상의 관계는 맺을 수 없음.

#### 4. 국가승인의 제한

- 국가승인은 보통 정식승인, 즉 법률상의 승인(de jure recognition)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잠정적인 가승인, 즉 사실상의 승인(de facto recognition)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사실상의 승인은 신생국이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인하여 정식승인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승인하거나 사태 발전 여하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승인과 구별됨.
  - 사실상의 승인은 전면적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외교특권도 인정하지 않지만, 승인효과는 법률상의 승인과 차이가 없음.
  
- 국가승인은 승인의 효과가 무조건으로 발생하는 무조건 승인이 일반적이지만, 승인효과를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도 국제정치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
  - 서독과 미·영·불 서방 3개국 간에 체결된 베를린 조약(1952)이 서독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유보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임.
  
- 특히 국제법적 주권국가로의 국가 승인문제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기존국가의 일부분이 본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경우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의 독립 등),
  - 1개국이 분열하여 2개 이상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통일 전 동·서독, 남북한, 중국·대만 등의 분단국),
  - 2개 이상의 국가가 합병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 III. 분단국 주권국가 승인에 관한 논쟁 사례: 동·서독

-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서독은 패전국으로서 각종 국제조약에서 주권 제약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주권 제약을 담고 있었던 국제조약을 활용, 오히려 동·서독 관계를 국제법상의 주권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내독 간 특수관계로 해석하는 국제법적 근거로 이용하는 한편,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회복 절차를 2 + 4 + 35 회담에서 종결시킴으로써 마침내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독일전역으로 확대·회복하였음.

#### 1. 주권회복을 위한 기본법 조항과 서독의 주권 제약에 관한 국제법

- 서독은 1949년 서방점령지역에 대해 새로운 국가정치질서를 마련해 줄 기본법을 공포하였는 바, 이 기본법에 먼 장래의 주권회복을 위해 용의주도하게 분단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서독은 분단 고착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헌법 제정을 꺼려 ‘헌법’(Verfassung)이란 말 대신에 ‘기본법’(Grundgesetz)이란 용어를, 기본법을 만드는 의회를 ‘제헌의회’(Verfassungsgebende Versammlung)란 말 대신 ‘의회평의회’(Parlamentarische Rat)라는 용어를 사용, 전 독일 통일국가의 성립 시까지 시간적·지역적으로 임시적 성격의 잠정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음.
  - 기본법 23조에서 “당분간.... 제주(諸州)의 영역에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법의 효력범위를 통일될 때까지 서독연방의

- 영토 안으로 한정하였으며,
- 기본법 146조는 “전 독일 국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할 경우 기본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독일 통일 후 전 독일에 유효한 완성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시간적으로 기본법의 잠정적 성격을 부여하였음.
- 서독 기본법은 기본법 전문에 통일주체로서의 전 독일국민, 통일기본원칙으로서의 민족자결원칙,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독일의 통일명제 등을 명시함으로써 독일 통일과정에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였음.
- 기본법은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의 존속을 인정하고, 서독이 이를 단독 승계한다는 입장을 동독과의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취했으며,
  - 기본법은 독일국적문제에 대해서도 1937년 12월 31일 당시 독일 국경선 안에 아직도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이 존속한다는 전제로 계속 하나의 독일국적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 서독이 동독 지역을 대표하지만 동독지역의 영토 및 독일인에 대한 전독일 주권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 독일통일은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며,
  - 전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민족자결권 행사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경우 외세는 개입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었음.
- 그러나 독일의 민족자결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영·불 서방전승 3국과 서독이 체결한 독일조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었음.
- 미·영·불 서방전승 3국은 독일을 정치적으로 승인하되, 서독 내 군대 주둔권 인정, 비상사태 선포 허락, 독일 영토회복을 의미하는 재

통일 및 평화조약과 관련,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서는 서방연합국 측에 대해 사전승인 및 협의라는 부대조건을 붙이고 전승 4대국의 특권을 인정하는 독일조약을 1952년 5월 26일 체결함으로써 서독 주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음.

- 독일조약에는 서독 내 외국주둔군 및 그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군대조약, 서독 국방비의 한도를 정하는 재정조약, 전쟁과 점령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경과조약, 외국군 및 그 구성원의 조세문제에 관한 조세조약 등의 부속조약이 첨부되었음.
- 한반도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전승국의 기득권 문제가 통일로 향하는 주권회복 과정에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국제조약에 의한 서독의 주권제약 사항은 서독이 소련과 체결하였던 모스크바조약(1970.8.12)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바, 독일제국 당시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설정된 국경선을 존중한다는 조항에 의해 독일의 재통일<sup>2)</sup>은 저지된 바 있었음.

- 이러한 독일 재통일규정은 서독과 폴란드와의 불가침조약(1970.12.7)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으며,
- 동·서독을 포함하여 유럽 35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협정에서도 ‘분단국 서독은 소련이 원하는 국경 불가침 원칙을 인정하고 전체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전승 4대국이 권리를 갖는다는 독일조약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통해 국제법적 주권이 제약되었음.

---

2) 독일재통일은 1937년 12월 31일 독일제국 당시의 영토회복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현 동·서독의 영토를 단순 통합하는 독일통일과는 영토 범위에서 차이를 지닌다.

-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동독영토 통과 보장 및 서베를린 지위에 관한 4대국 베를린협정(1971.9.3)에서도 서베를린은 서독의 영토가 아니며 동독영토 위의 통행은 동독이 아니라 전승국 소련이 허용한다는 조항에 의해 ‘전체독일과 베를린 문제’는 전승 4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 제약 요인이 재확인되었음.

## 2. 동·서독 관계: 잠정적 특수관계

- 서독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동독을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민족에 의한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재통일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양독관계를 ‘특수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로 규정한 데에서 다시 나타났었음.
  - 동독은 교류·협력으로 인한 서독으로의 병합통일을 우려, 동독국민들이 자결권 행사를 통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여 독일 영토 내에는 2개의 국가와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 즉 2민족 2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동독을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승인할 것을 서독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 양독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서독 측 입장과 상이한 주권 국가간의 국가관계로 보는 동독 측 입장은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시에도 극명하게 나타났음.
  - 서독은 1민족 2국가론에 의해 독일제국의 존속을 전제로 서독연방만이 독일제국을 단독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과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부분적 동일성이론에 입각, 동독은 외국이 아니며 독일 국적은 여전히 하나만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기본조약은 일종의 국제

법적인 조약이면서도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잠정적 협약(Modus Vivendi)으로 간주한 반면,

- 동독은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을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해석, 서독이 국제법적으로 동독의 국가주권을 완전히 승인한 것으로 주장하였음.

○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이 서독 기본법 독일재통일명제(Wiedervereinigungsgebot)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양독 간의 가깝고도 특수한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법적 지위이며” “동독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인 동시에 국제법적 주체(Voelkerrechtssubjekt)이기는 하나 서독은 이를 국제법상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기본조약의 체결은 양독관계의 특수한 성격의 사실상 인정(faktische Anerkennung besonderer Art)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헌으로 판결하고 기본조약에서 내독관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독일에 대한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 외교사절 대신 상주대표부를 교환하고,
- 양독간 거래는 대외무역이 아닌 내독교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sup>3)</sup>
- 국적문제는 기본조약상 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에 양측이 합의하였음.<sup>4)</sup>

---

3) 동서독 간 교역은 외국 간 교역이 아니라 잠정적 특수관계인 내독교역이라는 점에서 비관세원칙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고, 이 원칙은 GATT협정 제1장에서 예외조항의 규정을 받았고 유럽공동체 설립 시에도 비과세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동서독 관계가 국제법적인 주권국가 관계가 아니라 분단국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사례가 되었다.

4) 서독은 국적개념에 대하여 1937년 12월 31일 당시 국경선 내부 영토에 여

- 법적 구성원칙과 관련하여 양독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명하는 국제법적 논거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전체 독일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에서<sup>5)</sup> 특수관계의 논리적 근거를 찾는 바, 이는 서독과 미·영·불이 맺은 독일조약의 주권 제약사항, 소련·폴란드 등과 맺은 불가침조약<sup>6)</sup>에서의 오데르·나이제강 국경선 인정, 4대국 베를린 협정, 유럽안보회의(CSCE)의 주권제약 사항 등으로 동독과 서독이 외국이 아닌 1민족 2국가의 분단 상황에 의한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입장과 더불어,
  - 4대 점령국의 최고사령부가 독일에서 최고통치권을 접수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베를린 공동성명(1945.6.5)이 “독일은 합병되지 않고 단지 점령될 뿐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제국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으며, 1953년 2월 27일 「런던부채협정」에서<sup>7)</sup> 서독이 과거 독일제국의 계승자로 명문화되어서 양독의 수립

---

전히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의 독일국적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시까지 고수하였다. 기본조약 체결 이전 1967년 2월 20일 동독인민회의가 하나의 독일국적 입장을 포기하고 동독 국적법을 제정하여 1972년 동독의 입장을 기본조약 조문에 명문화하려고 하였으나 서독은 이를 거절하였다.

- 5) 1972년 11월 9일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가입으로 인해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 및 이와 관련하여 4장에 걸쳐 마련된 규정, 결의 및 실행사항은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발표된 전승 4대국의 성명서는 동·서독의 유엔가입이 국제법적인 주권국가라는 점을 말하지만, 양국관계는 분단에 의한 특수관계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6) 서독은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 상호 불가침, 유럽국경선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스크바조약(1970.8.12)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사항은 서독이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련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독이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면 전체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최종권한은 4대 전승국 소관이라고 규정한 1952년 독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소련을 설득함으로써 서독은 양독관계를 국제법적 주권국가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피해나갔다.
- 7) 이 협정의 원 명칭은 ‘Das Londoner Schuldenabkommen’이다. 동 협정에

도 독일의 국제법적 존재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양독관계는 국제법적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음.

### 3. 주권회복 과정으로서의 통일외교 정책 : 2 + 4 + 35 회담

- 서독은 주권제약 사항을 담고 있던 국제조약들에 입각하여 양독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서독의 권리사항으로 삼고 동독의 독립 및 외세의 개입을 저지하였으나,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진행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조약, 서독과 소·폴란드 간의 불가침 협정, 4대국 베를린 협정, 유럽안보회의(CSCE) 조항 등의 주권제약 사항들은 기본법상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의해 독일통일이 달성된다고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저해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음.
- 특히 독일영토의 최종결정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 문제’는 포츠담 협정과 독일조약에서 독일이 전승 4대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패전국 독일과 전승 4대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은 불평등한 관계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 대신 독일의 의사대로 2 + 4 + 35의 순서로 독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외상회의에서 합의하였음.

---

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 성립된 독일의 외채 인정 및 상환이 국제법상 구속성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제국이 전 부채의 승계자가 서독 연방임을 명시하고, 이 사실을 아테나워 수상은 1951년 3월 6일 연합국 고등 판무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 1952년 Bonn협정과 1954년 파리 의정서를 통하여 서방 3대국은 독일점령체제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평화조약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음.
- 2 + 4 + 35 회담에서 독일은 외국군대의 주둔 인정, 독일 영토회복을 의미하는 재통일 및 평화조약과 관련,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서는 연합국 측에 대해 사전승인 및 협의라는 독일조약 및 기타 국제조약의 독일주권 제약의 국제법적 사항을 해소하고 독일 통일을 달성하였음.
  - 2 + 4 + 35 회담에서는 통일독일의 정치군사적 위상문제와 폴란드와의 영토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다루어졌음.
- 독일통일은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해당되었으나, 전승 4대국들은 국제법적 근거로 독일통일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하고 있었던 바, 독일은 통일독일의 정치군사적 위상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관심사항을 만족시키고 전 독일에 대한 주권 회복을 달성하였음.
  - 미·영·불 서방3국은 미군의 독일 주둔, 나토내부에서의 영·불의 독일 견제 등의 이유로 통일독일이 나토(NATO)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소련은 안보적 이유에서 통일독일의 중립화를 요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는 바,
  - 1990년 나토정상회담에서 16개 나토회원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모스크바를 방문, “나토는 소련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래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고 확인시키고,

- 콜 독일총리는 통독군의 병력 상한선을 36만 명 선으로 하는 데 동의하고, 50억 마르크 차관 제공,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비용 12억 5천만 마르크 부담 등의 대소련 경제지원 약속을 통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조항 등 8개항에 전격적으로 소련과 합의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문제를 해결하였음.
- 포츠담 선언과 독일조약은 폴란드와의 서부국경선(오데르·나이제선)의 최종확정을 평화조약 체결 시까지 보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폴란드와의 영토문제 역시 독일 주권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는 바, 1990년 7월 17일 제3차 2 + 4 회담에서 서독과 폴란드가 오데르·나이제 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현 국경선을 존중한다고 최종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독일재통일 원칙을 포기하고 독일통일의 영토분쟁을 종식시켰음.
  - 서독과 폴란드와의 불가침 협정에서의 현 국경선 합의는 최종적 해결이 아니라 잠정적 인정에 불과하였음.
- 1975년 헬싱키선언에서 현존 국경선을 존중하는 국경불가침원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34개 회원국들의 양해를 얻어서 독일통일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완전히 주권을 회복하는 통일을 이룩하였음.

## IV.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1.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과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

- 남북한이 교차승인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 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을 승인할 경우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한반도에 2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주변국가들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통일 자체가 주변국가들의 개입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도 상존함.
  -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와 더불어 미국의 개념계획 5029 사례가 남북한 관계의 국제법적 모호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도 어긋나며, 북한 역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정부는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관계를 분단으로 「1민족 2국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되(de facto recognition), 남북한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1민족 1국가 2체제」의 이중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
  - 이는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동의한 바 있음.
  
- 19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 서문은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 남북한 관계를 국제법적 주권국가 사

이의 관계가 아닌 분단국가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였음.

-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남북한 관계를 국제법적 주권을 지닌 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 모두가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표명된 것임.

○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서 잠정적 특수관계 인정, 상호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원칙 등에 합의하고 있는 바, 이는 남북한이 「1민족 2국가」 관계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점에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민족 2국가」 관계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후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국제법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지만,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관계는 대외적으로 국가적 실체성을 상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국제법적 국가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잠정적 민족분단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정부의 의지의 표현임.<sup>8)</sup>

---

8) 북한을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이다. 그러나 영토조항이 북한에 대해서 국제법상 국가승인은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는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2. 남북한 특수관계의 국제법적 문제점

- 남북한 관계를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한이 합의했으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이러한 특수관계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박약할 경우, 향후 북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이를 빌미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내지 권리를 침해하고 적극 개입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한이 독립적 주권국가라는 입장과 더불어,
  - 남북한 동시 수교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분리된 주권국가라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북한 문제에 우리의 동의 없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기존 유엔회원국들의 신규회원에 대한 기존회원국들의 묵시적 국가승인 및 남북한 상호간의 묵시적 국가승인 (de jure implicit recognition)이 성립되어 남북한이 분단국의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국제법적 주권을 지닌 2개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 기존 유엔회원국들의 신규회원에 대한 묵시적 국가승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은 국제법적 논란이 있으나, 유엔가입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묵시적 국가승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다수의견임.
  - 과거 동독은 서독과 유엔 동시가입으로 동·서독이 서로 국가승인을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이를 부인하고 동독을 주권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음.

- 특히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에게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자국의 국제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
  - 이러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유엔 단일대표권을 주장하여 대만을 축출하고,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와는 외교적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을 주창하고 있음.
  - 서독은 미·영·불과 맺은 독일조약의 주권제약 사항, 소련·폴란드 등과 맺은 불가침조약에서의 오데르·나이제강 국경 인정, 4대국 베를린 협정, 유럽안보회의(CSCE)의 주권제약 사항 등과 더불어, 독일제국의 지속이라는 국제협약 등에서 동·서독 관계를 외국이 아닌 1민족 2국가의 분단 상황에 의한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

## V.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통일정책적 과제

- 남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민족간 특수관계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제법적 근거가 극히 박약하므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을 향후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 등에 반영함으로써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음.
  - 동·서독의 경우 패전국으로서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조약이 상당 정도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국제조약은 역설적으로 독일이 분단국가이며 동·서독 관계가 주권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분단국 간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었음.
  - 반면, 남북한은 이러한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민족자결권 행사는 가능하나, 남북한 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기본합의서는 전권대표인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난 후 조약체결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최종 재가를 거쳤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주권국가 상호간의 정식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음.
  
- 그러나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는 점은 향후 남북한 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획득,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 조약으로 남북 당사국이 인정했다는 증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 사이에 맺는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문건인 조약에는 국제법적 주체에 국가도 있지만 국제기구, 교전단체도 있는 바, 남북한은 상호간에 국제법상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교전단체 및 이에 준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약 체결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만일 기본합의서가 국회비준 동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기본합의서는 국내법상 법률에 부합하는 지위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는 남북한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합의서 자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재 우리정부는 남북무역에서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우리정부는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작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준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북한상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무관세원칙은 북한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GATT 최혜국대우(MFN) 의무에 상응하는 무관세원칙에 의한 교역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 우리정부는 서독의 경우처럼 남북한 교역을 GATT 또는 WTO에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 예컨대 GATT 협정 불적용 주장방안, GATT 협정의 웨이버 조항 원용방안, WTO와의 특별의정서 체결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서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엔 헌장 제102조 1항에 따라 유엔사무국에 등록해야 함.

- 유엔 헌장 102조 2항은 “유엔에 등록되지 않는 조약 및 협정의 당사국은 유엔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조약 및 협약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우리정부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채택과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야 함.
  - 평화체제 구축 시 남북한 교차승인 등의 국제조약
  - 부득이한 경우, 당해국가에 대통령 명의의 서신을 보내더라도 남북한 관계는 분단국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관계가 분단상황에 의한 특수관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무관세교역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자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탈북 및 귀순요청 시 이들을 내국인으로 대우하여 국제사회에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이며, 남북한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우리영토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시켜서 관습국제법적인 명분을 축적해나가야 함.
- 우리정부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한관계를 국제법적 주권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양독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남북한은 특수관계로 보는 것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 남북 기본합의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엔헌장 제1조/제55조

의 인민의 자결권(민족자결권 포함)에 입각한 남북한의 자결권 행사로 보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현재 북한 역시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은 동독과 유사하게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바,
- 우리정부는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를 거부하고,
- 향후 북한과의 협약 체결 시 가능한 한 주권국가 승인 오해 여지가 있는 문구는 자제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법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함.

○ 동·서독의 경우 동서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유럽분단이 해체됨으로써 민족자결원리와 독일분단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입각하여 통일독일의 군사정치적 위상문제를 해결, 마침내 통일국가를 이룩하였는 바, 우리 역시 한반도 분단을 규정하는 국제법적 근거와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동북아 분단 상황을 해결하는 외교·안보적 노력을 경주하여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 다른 국가들의 대만문제 개입 등에 무력 대응 불사를 주장하는 것도 대만에 대한 강력한 주권 유지·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우리의 동의 없는 외세의 북한 무력개입을 강력 저지해야 할 것임.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총서

---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

###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

## 학술회의총서

---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

## 논 총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

## 영문초록

---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

KINU 정책 연구 시리즈

---

-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근, 곽진오
-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

Studies Series

---

-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통일정세분석 2005-14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 2285-0936~7  
인쇄일 2005년 8월 일  
발행일 2005년 8월 일

---